

보도시점 2024. 1. 11.(목) 09:00 배포 2024. 1. 11.(목) 08:30

[2024년 특허청 정책 돋보기]

지식재산 분쟁 해결사,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'역대 최다'

-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'23년 신청건수 159건, 전년 대비 2배 증가 -
- 개인·중소기업 신청이 84% ... 사회적 약자의 분쟁 해결에 기여 -

(새싹기업(스타트업) 갑사; 신청인) 같은 업계 중견기업 을사와의 디자인권 분쟁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담이 컸음.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4개월 만에 합의함으로써, 향후 민사소송 시 추가적으로 소요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.

(중견기업/대기업 병사; 피신청인)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유사명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유튜버 정과 분쟁이 발생했음.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해,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권을 양도받음으로써, 신제품에 대한 법적 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.

특허청은 '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*되어, 분쟁조정 위원회 설립('95)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.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,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]

*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(건) : (' 22) 76 → (' 23) 159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,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특히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'재판상 화해'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.

<개인·중소기업 신청이 84%...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>

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, ▲(활용주체) 개인·중소기업 신청(134건)이 84%로,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·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]

▲(조정대상)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·디자인 사건(111건)이 70%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, 특허·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(34건)도 21%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 [붙임 2]

<소송 대비 6~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>

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, ▲(기간)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~8배*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]

* 1심 평균 처리기간 : 특허 554일, 상표 393일(' 21, 법원행정처)

▲(성립률)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(53%)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, 일반적인 조정제도* 대비 20%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. [붙임 2]

* 민사조정 성립률 30.7%(' 22, 사법연감)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”며 “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,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·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‘통합(원스톱) 분쟁해결 체계’ 구축,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특허·상표·디자인·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·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www.koipa.re.kr/adr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(1670-9779)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※ 붙임: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재석 (042-481-5213)
		담당자	사무관	이우정 (044-481-8227)





“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?
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!
**산업재산권
분쟁조정제도** ”



36 산업재산권 분쟁제이란?

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·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[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]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

36 신청 분야

- 산업재산권 분쟁 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
- 직무발명 관련 분쟁
- 영업비밀 관련 분쟁
-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

36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

- 신속한 분쟁해결 (3개월 이내)
-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
- 절차 비공개 (비밀 보장)
-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

36 신청 자격

- 산업재산권자·실시권자·사용권자
- 직무발명자·영업비밀 보유자
-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
-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
36 신청 방법



36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



홈페이지 www.kopia.re.kr/adr
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T 1670-9779 F 02-553-5865 E-mail ip.adr@korea.kr

붙임 2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

□ '23년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신청	처리 현황				성립률 (A/(A+B))
	성립(A)	불성립(B)	조정불응	기타 (취하·진행중)	
159	40	36	30	53	53%

□ '23년 분쟁조정 기업 규모별 신청 현황

(단위 : 건)

신청인 \ 피신청인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개인	기타	합계
신청	대기업	3	1	1	-	-	5
	중견기업	-	-	-	-	-	-
	중소기업	3	7	104	5	1	120
	개인	2	1	6	4	1	14
	기타*	-	-	15	5	-	20
합계		8	9	126	14	2	159

* 외국기업·대학·공공연 등

□ '23년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'19	'20	'21	'22	'23	합계
신 청	45	70	83	76	159	433
특허·실용신안	7	23	8	11	26	75
상표·디자인	35	35	41	48	111	270
부정경쟁행위	-	5	24	4	14	47
영업비밀	-	2	2	11	1	16
직무발명	3	5	8	2	7	25

□ '23년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

(단위 : 일)

구 분	'19	'20	'21	'22	'23
처리기간	53	65	69	62	66